#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63

발의연월일: 2021. 5. 3.

발 의 자: 정춘숙・이은주・서동용

김정호 · 김민기 · 김경만

김병욱 · 김윤덕 · 용혜인

이상헌 · 윤후덕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 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 요함.

이에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 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2조, 제57조 및 제117조).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2. 「약사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약 국
- 3. 그 밖에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률 제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 중 "속임 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 료기관이나 약국을"로. "요양기관과"를 "의료기관이나 약국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요양기관"을 "요양기관 이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약국(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 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요양기관이"를 "요양기관등이"로, "요양기관으로부터"를 "요양기관등으로부터"로 한 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 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 관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제117조 중 "제42조제5항을"을 "제42조제6항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기관의 범위 및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4조제2항이나 제33조제2항·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거나 약사·한약사가「약사법」 제20조제1항이나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 또는 운영한 경우에는 제4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 제42조(요양기관) ① ----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 <후단 삭제>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신 설>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ㆍ제8항을 위반 하여 개설 · 운영하는 의료기 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 또 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 ② (생략)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u>제2항에</u>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 한다.
-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u>제2항</u>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
- ⑤ 제1항·<u>제2항</u> 및 <u>제4항에</u>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

개설한 약국
3. 그 밖에 공익이나 국가정책
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
합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제3항에
1. <u>제3항</u>
2. <u>제3항</u>
⑤ 제3항에
<u>⑥</u> <u>제3항</u> <u>제5항에</u>

하다.

법률 제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 람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 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 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 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

법률 제1777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금액을-----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 람 ·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 은 요양기관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요양기 관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 기관이나 약국
-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 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	
<u>양기관을</u> 개설한 자에게 그 <u>요</u>	의료
<u>양기관과</u> 연대하여 같은 항에	<u>기관이나 약국과</u>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u>&lt;삭 제&gt;</u>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	
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	
<u>기관</u>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u>&lt;</u> 삭 제>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	
<u>국</u>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u>&lt;</u> 삭 제>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	
설 · 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u>&lt;</u> 삭 제>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약	

<u>국</u>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

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

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 짓 진단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 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 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 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 다.

- ④ (생략)
-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 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17조(벌칙) <u>제42조제5항을</u> 위 저 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

요양기관이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약국(이하 이 조에서 "요
양기관등"이라 한다)
<u>.</u>
④ (현행과 같음)
⑤ 요양기관등이
<u>\\\.</u>
양기관등으로부터
,
<u>.</u>
베117조(벌칙) <u>제42조제6항을</u>

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	
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u>.</u>